

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안 검토의견

의정담당관 : 서인석 ☎2180-7769 의정총괄팀장 : 정형석 ☎7771 담당 : 김극남 ☎7772
인사담당관 : 심혁보 ☎2180-7500 공직윤리확립팀장 : 조동호 ☎7924 담당 : 송승훈 ☎7938

□ 조례안 개요

- 발 의 자 : 김 경 의원 대표발의(운영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
- 제안이유
 -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사각지대 해소
- 주요내용
 -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상담과 예방교육 진행 (안 제5조~제7조)
 - 행위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(안 제8조~제10조)

□ 부서 검토의견 : 보류 또는 수정

- 현재 서울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는 서울시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
 - 서울시 매뉴얼 적용, 교육 참여, 심리상담 지원, 조사의뢰 등
- 최근 4년간 신고 및 처리건수 전체 221건 중 서울시의회 발생은 총 4건, 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은 없음

(’24. 2월 현재 기준, 출처 : 노동정책담당관 자료 제공)

연도	신고건수 (시의회)	조사담당관 처리결과						
		기각	취하	각하	권고	조사중지	조사중 해결	조사진행중
계	221(4)	95(2)	41(1)	39(1)	30	7	3	6
2023년	33 (3)	8 (2)	11	6 (1)	1	1	-	6
2022년	67	38	9	6	12	1	1	
2021년	63 (1)	26	10 (1)	10	13	3	1	
2020년	58	23	11	17	4	2	1	

- 반면, 시의회는 인사권 외 조직·예산권이 없어 조례 제정시(안 제6조) 의무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(심리상담사) 배치에 서울시의 정원 배정이 필요하고,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